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업무대행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대행자가 지정서를 반납('20.6.)함에 따라 동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행 중임, 그런데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시험·검정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관련 내용을 두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법률간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변경(안 제86조 제1항)”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제출 기한을 매년 11월 30일

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추가

나. “업무의 위임 권한 신설(안 제94조 제6항)”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매년 11월 30일”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으로, “작성 하여”를 “이사회 의 결을 받은 후”로 한다.

제9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2.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자재·약제의 검정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을 <u>작성하여</u> 해양수산부장관 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 <u>다음 회계연도 개시전</u> ----- ----- -- <u>이사회</u> 의 의결을 받은 후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 ⑤ (생략)	제94조(권한의 위임)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연구 센터장에게 위임(법 제112조제3 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다.</u> <u>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 재 · 약제의 성능시험</u> <u>2.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자 재 · 약제의 검정</u>
<u>⑥</u> (생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9